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(안) 중개정조례(안)

의 안	168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5년 7월 11일

제 안 자 : 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이 2005.1.27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“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”라는 규정 삭제하고
- 나. 제2차 정례회의 개최날짜를 변경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.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호중 “11월 25일”을 “11월 2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제3조 【회기】	제4조 【집회】
<p>제3조 【회기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기정안</u></p> <p>제3조 【회기】 <삭제></p>
<p>제4조 【집회】 영 제19조의4의 규정 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공휴 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 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 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·10 월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 의 의결로 정한다. 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25일</u> 에 집회한다. 	<p>제4조 【집회】 <현행과 같음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<현행과 같음> 2. <u>11월 20일</u>